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320
----------	------

2025년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10월 18일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안 제2조)
-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13세 → 9세)(안 제8조제2항제7호)

-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제2항제9호)
-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안 별표 1)
-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한 용어 개선(안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있음(반영).

―― < 미 반 영 >――

- ▶ (안 제4조)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류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변경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별표1)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소도 시설로 표기 요청
⇒ 재구조화에 따라 대표센터 외 분소는 부서단위로써 민간위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 (별표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주사무소 위치 변경(마포구 → 중구)
⇒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마포센터가 대표센터로 기능하며, 주사무소 변경 이유가 없음

―― < 반 영 >――

- ▶ (별표1) 자립지원관 및 강북일시청소년쉼터 위치 정정 요청
⇒ 시설의 위치 현행화를 위해 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보완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을 현행화하며, 수영장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요금을 체계화하여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 본 개정안의 내용

-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안 제2조)
-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 ▶ (현행)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개정) 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안 제8조제2항제7호)
- 시립청소년시설 명칭·위치·기능 등 현행화, 사용료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
 - ▶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현행화 (안 별표 1)
 - ▶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부과 대상 정비 (안 별표 2)
- 용어의 정비 등
 - ▶ 자구 수정 (안 제2조, 안 제5조제4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 ▶ 붙여쓰기, 띠어쓰기 (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제4항)
 - ▶ 법령 정비 (안 제8조제2항제9호, 안 제8조제4항)
 - ▶ 조문 삭제 (제8조제2항제10호 삭제)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 (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근거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 -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안 제8조제2항제7호)

- 안 제8조제2항제7호는 청소년시설(별표 1) 수영장의 여성 이용자 사용료 감면 연령(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완화(13세 → 9세)하려는 것임.
 - 본 개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132호)'을 반영¹⁾한 것으로, 여성 청소년의 초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더 많은 여성 청소년(9세 ~ 12세)에게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치로써,
 - 현행 규정의 취지(월경 기간 여성의 수영장 이용 불편에 따른 사용료 감면, 2008.7.30. 개정·시행)를 고려할 때, 감면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범위(9세~24세)를 본 조례 감면 대상에 반영하고, 청소년기 여성의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감면제도와의 중복 감면(다자녀 감면 등)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 규제철폐안(132호) 관련 보도자료(2025.5.29.)〉

〈(132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세→9세 완화〉

-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현재 서울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 이러한 감면 제도에 초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 대상 연령을 기준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132호의 주요 내용이다. 더 많은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등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만 가능하다.
- '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3학년 1,087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약 69.2%가 초등학교 4~6학년(9~12세) 시기에 초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다만, 매년 사용료 감면 손실 보전금(비용추계, 연간 약 34,300천원)이 발생하는바, 향후 감면 확대에 따른 효과(이용률,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1)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상상대로 서울, <https://idea.seoul.go.kr>)의 '규제철폐 제안하기'에 등록된 시민 제안(청소년센터 가임기 여성할인 나이 규제 개선)을 수렴하여 채택함.

다. 시립청소년시설 명칭·위치·기능 등 현행화, 사용료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

1) 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현행화 (안 [별표 1])

- 안 [별표 1]은 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4조)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를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임.
- 현행[별표 1] 서울시 청소년시설은 크게 기능과 성격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② 청소년특화시설, ③ 유스호스텔), 청소년복지시설, 기타청소년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 2022년(2022.3.10. 개정)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 종료된 시설명 삭제(1개소), 시설 명칭(15개소) 및 기능(8개소), 위치(7개소) 현행화, 시설 재분류(5개소) 하려는 것임.

현 행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개정안 (현행화 내용)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기능(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곱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table border="1"> <tr> <td colspan="5">② 청소년 특화시설</td> </tr> <tr> <td>중구</td><td>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td><td>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td><td>퇴계로26가길 6</td><td></td></tr> <tr> <td>용산구</td><td>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td><td>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td><td>한강대로 255</td><td></td></tr> <tr> <td>영등포구</td><td>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td><td>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td><td>영신로 200</td><td></td></tr> <tr> <td>동작구</td><td>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td><td>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td><td>여의대방로20길 33</td><td>시설 재분류(3. 기타청소년시설) 기능(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td></tr> <tr> <td>은평구</td><td>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td><td>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td><td>통일로 684</td><td>삭제(2023.6.30. 운영종료 시설)</td></tr> <tr> <td>노원구</td><td>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td><td>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td><td>노원로 16길 16</td><td></td></tr> <tr> <td>양천구</td><td>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td><td>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td><td>신정동 1290-6외 4</td><td>시설명(시립청소년음악센터) 기능(청소년 음악활동 지원)</td></tr> </table>					② 청소년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시설 재분류(3. 기타청소년시설) 기능(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삭제(2023.6.30. 운영종료 시설)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시설명(시립청소년음악센터) 기능(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② 청소년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시설 재분류(3. 기타청소년시설) 기능(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삭제(2023.6.30. 운영종료 시설)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시설명(시립청소년음악센터) 기능(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table border="1"> <tr> <td colspan="5">③ 유스호스텔</td> </tr> <tr> <td>중구</td><td>시립서울유스호스텔</td><td>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td><td>퇴계로26가길 6</td><td></td></tr> <tr> <td>영등포구</td><td>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td><td>"</td><td>영신로 200</td><td></td></tr> </table>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시설명(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치(가산디지털1로 120)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시설명(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시설명(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시설명(시립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승리길 156	시설명(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시설명(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시설명(시립일시청소년쉼터(서북)) 시설명(시립일시청소년쉼터(서남)) 위치(각각 공란 처리)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시설명(시립일시청소년쉼터(동북)) 시설명(시립일시청소년쉼터(동남)) 위치(각각 공란 처리)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시설명(시립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	도당로 17길34 외	시설명(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한화형)) 위치(시로봉로 15길 93 외)																																							
3. 기타 청소년 시설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기정 밖)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시설명(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기능(기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위치(한천로 140길 5-26)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분소 삭제(대표센터만 기재)																																							
	동작구	시립노래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시설 재분류(3의3, 기타청소년시설) *26년 5월말까지 유지(분소전환예정)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시설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대표 센터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설관로 18 송림빌딩 5층	분소 삭제(대표센터만 기재)																																							
	도봉구	시립청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시설 재분류(3의3, 기타청소년시설) *26년 5월말까지 유지(분소전환예정)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분소 삭제(대표센터만 기재)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구천면로 2	분소 삭제(대표센터만 기재)																																							
	도봉구	시립청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시설 재분류(3의3, 기타청소년시설) *26년 5월말까지 유지(분소전환예정) 기능(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등포구	시립아하체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시설명(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대표 센터 기능(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시설 재분류(3의2, 기타청소년시설) *27년 6월말까지 유지(분소전환예정) 자치구(성북구) 이전시설(중랑→성북) 시설명(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위치(길음로7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의대방로 20길 33	분소 삭제(대표센터만 기재)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	통일로 684	분소 삭제(대표센터만 기재)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자치구(양천구) 기능(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포함) 위치(남부순환로54길 37)																																							

개정안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설명	기능	위치
①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 활동 시설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장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현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 특화시설				
2. 청소년 복지 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③ 유스호스텔				
3. 기타 청소년 시설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북)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중랑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립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평생교육국은 '2. 청소년복지시설' 란의 명칭 변경(11개소)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요청2)(청소년쉼터 명칭 체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 청소년쉼터의 명칭 체계 〉

- 시설별로 상이한 청소년쉼터 명칭 체계를 일원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쉼터임을 명시
- 명칭표시방법 : 지역 - 성별 - 유형 - 청소년쉼터
 - (예시) ① 서울시립강남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대구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 ② 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사업안내 2권 197p 발췌

- '3. 기타청소년시설' 란의 명칭 변경(대표센터만 기재, 분소 삭제) 및 재분류(위탁기간 만료전 성문화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별도 분류 등)는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행정1부시장 방침-2024.10.23.)에 따른 '대표센터 중심의 개편'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입장임.

〈 청소년시설 재구조화 추진 개요 〉

- 추진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청소년정책과-18927, '24.10.23.)
- 추진목적
 - 다수의 소규모센터가 총괄기구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균질화된 서비스 부족하여 '서비스 표준화' 필요
- 추진내용
 - 소규모센터 재구조화 :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
 - (대표센터) 교육, 상담, 표준매뉴얼 개발, 사례연구, 행정 등 종합기능 수행
 - ▶ 성문화센터 7개소 → 1개 대표센터 및 6개 분소
 -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6개소 → 1개 대표센터 및 5개 분소
 - (분 소) 대표센터 내 '부서' 단위 편입, 교육·상담에 집중
- 향후 계획
 - 대표센터 체제 전환·개소 : 위탁기관 만료 시 분소전환 순차 추진(~'27년)
 - 분소 추진 : 창동성문화센터, 보라매·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26. 7월), 성북성문화센터('27. 7월)

출처 :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작성

- 2)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들이 무허가시설을 공공시설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의 명칭 변경을 요청함.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2024.10.23.)〉

구 분	성문화센터(7센터→ 1센터, 6분소)	인터넷센터(6센터→ 1센터, 5분소)
동 북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 동 ⇒ 동북1 분소 성 북 ⇒ 동북2 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 동 ⇒ 동북분소
동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 진 ⇒ 동남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 진 ⇒ 동남분소
서 북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 평 ⇒ 서북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포 ⇒ 대표센터 강 북 ⇒ 서북분소
서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하 ⇒ 대표센터 동 작 ⇒ 서남1 분소 드 림 ⇒ 서남2 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라매 ⇒ 서남1 분소 강 서 ⇒ 서남2 분소

- 또한 평생교육국은 입법예고(2025.8.21. ~ 9.10.)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미반영, 반영) 하였음.

〈 미 반 영 〉

- ▶ (별표 1)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류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변경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별표 1)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소도 시설로 표기 요청
⇒ 재구조화에 따라 대표센터 외 분소는 부서단위로써 민간위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 (별표 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주사무소 위치 변경(마포구 → 중구)
⇒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마포센터가 대표센터로 기능하며, 주사무소 변경 이유가 없음

〈 반 영 〉

- ▶ (별표 1) 자립지원관 및 강북일시청소년쉼터 위치 정정 요청
⇒ 시설의 위치 현행화를 위해 반영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요약

- 본 조례에서 [별표 1]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정하는 기능(제4조)을 가지고 있으며, [별표 1]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을 위임·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제10조제1항)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표 1]의 현행화는 중요성과 동시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나,

- 이를 현행화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개선 노력(2022.3.10. 개정 이후 미조치)이 부족했던바, 향후 변경 사항(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등)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평생교육국의 주의와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본 개정안 부칙(안 제2조)에서 위탁기간 만료 이후 분소 추진 예정인 청소년시설(시립성북·창동성문화센터, 시립보라매·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대한 유효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바,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청소년시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 칙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설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부과 대상 정비 (안 별표 2)

- 안 [별표 2]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의 부과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의 부과 대상을 성인(25세 이상), 청소년(9~24세), 유아(8세 이하)로 3단계로 구분(연령 기준)하려는 것임.
 - 안 [별표 2]의 개정은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체계를 '학제 중심(유아, 초·중·고생, 대학생·성인)'에서 '연령'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연령기준, '청소년 기본법', 9세~24세)을 기준으로 성인과 유아로 구분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의 분란과 혼선 최소화(학적증명+연령확인 → 연령 확인) 및 9~12세 청소년의 시설 접근성·편의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료 구 분</th><th>대 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체육관</td><td>대학생, 성인</td></tr> <tr><td>초·중·고생</td></tr> <tr><td>어린이</td></tr> <tr> <td rowspan="3">수영장</td><td>대학생, 성인</td></tr> <tr><td>초·중·고생</td></tr> <tr><td>어린이</td></tr> <tr> <td rowspan="2">헬스장</td><td>대학생, 성인</td></tr> <tr><td>고등이하</td></tr> </tbody> </table>		사용료 구 분	대 상	체육관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수영장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헬스장	대학생, 성인	고등이하
사용료 구 분	대 상													
체육관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수영장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헬스장	대학생, 성인													
	고등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료 구 분</th><th>대 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체육관</td><td>성인</td></tr> <tr><td>청소년</td></tr> <tr><td>유아</td></tr> <tr> <td rowspan="3">수영장</td><td>성인</td></tr> <tr><td>청소년</td></tr> <tr><td>유아</td></tr> <tr> <td rowspan="2">헬스장</td><td>성인</td></tr> <tr><td>청소년 이하</td></tr> </tbody> </table>		사용료 구 분	대 상	체육관	성인	청소년	유아	수영장	성인	청소년	유아	헬스장	성인	청소년 이하
사용료 구 분	대 상													
체육관	성인													
	청소년													
	유아													
수영장	성인													
	청소년													
	유아													
헬스장	성인													
	청소년 이하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사용료 할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p>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사용료 할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p>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 25세 이상 청소년 : 9~24세 유아 : 8세 이하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별표 2]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대 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체육시설 이용수업</td><td>대학생, 성인</td></tr> <tr><td>초·중·고생, 어린이</td></tr> <tr> <td rowspan="2">외국어</td><td>대학생, 성인</td></tr> <tr><td>초·중·고생, 어린이</td></tr> <tr> <td rowspan="3">예체능</td><td>대학생, 성인</td></tr> <tr><td>초·중·고생, 어린이</td></tr> <tr><td>그룹활동 (유아반 등)</td></tr> <tr> <td rowspan="2">취미·교양 문화 등</td><td>대학생, 성인</td></tr> <tr><td>초·중·고생, 어린이</td></tr> <tr> <td>상담</td><td>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td></tr> <tr> <td>청소년 사업</td><td>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td></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외국어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예체능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그룹활동 (유아반 등)	취미·교양 문화 등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구 분	대 상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외국어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예체능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그룹활동 (유아반 등)																			
취미·교양 문화 등	대학생, 성인																			
	초·중·고생, 어린이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영역 구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영역 구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 25세 이상 청소년 : 9~24세 유아 : 8세 이하 																				

라. 용어의 정비 등

1) 조문 삭제 (제8조제2항제10호 관련)

-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제8조제2항제10호(제로페이 감면)는 사용료 감면 적용 존속기간(2021.12.31.)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해당 규정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별표 2) 사용료를 시장이 감면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감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몰조항(한시조항)³⁾임.
- 한시적 규정을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는 경우, 효력에 대한 해석상 혼란 및 명확성의 저하 등이 우려되며, 현재 효력이 없는 규정이 본문에 남아 있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조·항·호 별 규범력 파악 등)하게 되므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최초 규정 신설(2019.5.2. 신설) 당시의 감면 적용 존속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이 지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가 현재 시점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9. (생 략)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7117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0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 칙 <제7117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

3)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

2) 그밖에 용어 정비

- 본 개정안의 용어 정비는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5조제4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붙여쓰기(쌍점*, 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안 제8조제2항 제7호·제8호·제9호) 및 띄어쓰기(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제4항), 법령명 정비(안 제8조제2항제9호, 안 제8조제4항) 등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용어·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 : “정의는” → “뜻은”

안 제2조제1호 :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
→ “시설로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및 ∨ 「지방자치법」”

안 제5조제2항 :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 “운영자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제3호”

안 제5조제4항 : “시장”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 “비수박시설 ∨ :” → “비숙박시설 :”

안 제7조제1항제2호 : “숙박시설 ∨ :” → “숙박시설 :”

안 제8조제1항 : “범위 안” → “범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시장”

안 제8조제2항제7호 : “경우 ∨ : 월 사용료” → “경우 : 월 사용료의”

안 제8조제2항제8호 : “경우 ∨ :” → “경우 :”

안 제8조제2항제9호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 →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안 제10조제1항 : “범위 안” → “범위”

안 제10조제4항 :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안 제11조제1항 : “범위 안” → “범위”

안 제15조제2항 : “범위 안” → “범위”

※ 쌍점(：)의 사용법 (「한글 맞춤법」 부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예 흔하지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예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문,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예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예 65:60(65 대 60)

예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0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안 제2조)
- 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13세 → 9세)(안 제8조 제2항제7호)
- 다.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제2항제9호)
- 라.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안 별표 1)
- 마.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한 용어 개선(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있음(반영)

< 미 반 영 >

- ▶ (안 제4조)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류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변경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별표1)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소도 시설로 표기 요청
⇒ 재구조화에 따라 대표센터 외 분소는 부서단위로써 민간위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 (별표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주사무소 위치 변경(마포구 → 중구)
⇒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마포센터가 대표센터로 기능하며, 주사무소 변경 이유가 없음

————— < 반 영 > —————

- ▶ (별표1) 자립지원관 및 강북일시청소년쉼터 위치 정정 요청
⇒ 시설의 위치 현행화를 위해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최현수 (☎ 2133-411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을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비숙박시설 :”을 “비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숙박시설 :”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13세”를 “9세”로, “경우 : 월 사용료”를 “경우: 월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를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설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설명	기능	위치
①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 활동 시설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종로구	시립종로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사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2. 청소년 복지 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③ 유스호스텔				
3. 기타 청소년 시설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북)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종로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한화행)	"	시립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동작구	시립보로마이너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u>뜻은</u> ----- ---.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u>시설로 「청소년기본법」</u>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 ----- ----- ---- <u>시설로 「청소년기본법」</u>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u>	② <u>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 ----- ----- ----- ----- ----- -----.</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u>	④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 -----.</p>
<p>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사용시간 등) ①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비숙박시설</u> : 09:00~22:00 2. <u>숙박시설</u> : 24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비숙박시설</u>: ----- 2. <u>숙박시설</u>: -----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u>범위</u>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제8조(사용료 등) ① ----- ----- <u>범위</u>----- ----- ----- ----- --. ----- <u>시장</u>----- ----- ----- -----.</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 략) 7. <u>13세</u>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p>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u>9세</u> ----- ----- ----- 경우: 월 사용료의 --

0분의 1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
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월 사용료의 100
분의 5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
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
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
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
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

8. _____

28-1:

9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경우: 시설대관 사
용료와 -----

〈작제〉

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 ·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범위-----.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p>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 ----- -----.</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p>
<p>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u>범위</u>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① ----- ----- ----- ----- ----- ----- ----- ----- ----- <u>범위</u>-----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범위</u>----- ----- -----.</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손실 보전금 증액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7호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13~55세 여성에서 9~55세 여성으로 확대 (9~12세 여성에 대한 감면 손실 보전금 추가 소요)
- 비용추계의 전제
 - '24년 1년간 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이용한 만 9~12세 여성 청소년의 사용료 납부금액 총 합계의 10%(감면율) 산출, '24년 대비 '25년 시립청소년센터 전체 감면(저소득, 다동이 등 기 추진 중인 감면) 금액의 증가율 1% 적용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청소년시설 9~12세 여성 감면 손실 보전금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소계(a)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국비	0	0	0	0	0	0
	지방세수입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등	0	0	0	0	0	0
민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5.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김태영(☎2133-412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4년 타 감면(저소득, 다동이 등)을 받지 않은 만 9~12세 여성 청소년의 연간 수영장 사용료 총 납부금액의 10% : 33,959,971원

(단위 : 원)

연번	센터명	'24년 9~12세 여성 수영장 사용료 납부내역(A)	감면 손실 보전금 예상 내역(B=A/10)
	계	339,599,710	33,959,971
1	강북청소년센터	13,070,000	1,307,000
2	구로청소년센터	47,769,300	4,776,930
3	금천청소년센터	11,835,130	1,183,513
4	노원청소년센터	62,430,850	6,243,085
5	동대문청소년센터	14,037,000	1,403,700
6	마포청소년센터	36,259,870	3,625,987
7	망우청소년센터	3,616,000	361,600
8	목동청소년센터	10,537,000	1,053,700
9	문래청소년센터	48,893,010	4,889,301
10	서대문청소년센터	35,856,400	3,585,640
11	성동청소년센터	8,100,000	810,000
12	성북청소년센터	17,488,150	1,748,815
13	수서청소년센터	3,279,600	327,960
14	은평청소년센터	26,427,400	2,642,740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 중 14개소만 수영장 운영

2. '24년 청소년센터 전체 감면금액 대비 '25년 감면(예상)금액 증가율
: 약 1%

(단위 : 천원)

'24년 감면금액	'25년 감면 예상금액	증가금액(증가율)
3,016,612	3,049,997	33,385(1%)

⇒ 33,959,971원 × 101% = 약 34,30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